

화순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4. 20 문팔갑의원외 3

나. 회 부 일 자 : 2000. 4. 20

다. 상 정 일 자 : 2000. 5. 1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자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 중 구 의원

나.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16691호, 2000. 1. 8)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국외여비중 일비와 숙박비의 지급 단가를 인상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는 10퍼센트 인상함(별표 2)
-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제8조(별표1, 별표2)의 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문 찬 주)

-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0년 1월 8일 개정공포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회기수당 지급 기준과 국외 여비중 일비와 숙박비의 단가를 인상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고,

- 국외 출장시 일비는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는 10퍼센트 인상하는 조례안으로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첨 부 : 화순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회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별표1」 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한다.

「별표1」 와 「별표2」 하단 비고란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2」 중 일비(1일당)란 및 숙박비(1야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의장·부의장	가등급 35	가등급 151
	나등급 35	나등급 109
	다등급 35	다등급 84
	라등급 35	라등급 72
의원	가등급 30	가등급 132
	나등급 30	나등급 86
	다등급 30	다등급 64
	라등급 30	라등급 5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 (회기수당 지급) ①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회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u>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3조 (회기수당 지급) ①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회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삭제></p> <p>② (생략)</p>